

대전직할시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안

의안 번호	262
----------	-----

제출년월일 : 1993 . 7 .

제 출 자 : 대전직할시교육감

1. 제 안 이 유

지방재정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교육감은 지방교육재정을 계획성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중·장기지방교육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방교육재정계획 수립에 관하여 교육감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동법 제16조의2제1항의 규정으로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동조 제2항에 동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본 조례안을 제안하는 것임.

2. 주요골자

- 가. 대전직할시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규정목적을 정함(안 제1조)
- 나. 위원회의 구성,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임무, 위원회의 기능과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 간사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2조 내지 안 제5조, 안 제8조)
- 다.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의 배부와 위원회가 필요로 하는 경우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내지 안 제7조)
- 라. 위촉위원이 회의에 참석할 때에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고, 위원회의 심의결정 사항을 교육감에게 지체없이 보고하도록 하였음 (안 제9조 내지 안 제10조)
- 마.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음 (안 제 11조)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발췌 (따로 붙임 참조)

조례 제 호

대전직할시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6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대전직할시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 ① 대전직할시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11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11인의 위원중 위원장을 포함한 6인의 위원장은 당연직위원으로 하고, 5인의 위원은 위촉위원으로 한다.

③ 당연직위원은 대전직할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소속 부교육감, 각국장, 기획감사담당관 및 행정과장이 되고, 이중 부교육감이 위원장이 되며, 관리국장이 부위원장이 된다.

④ 위촉위원은 교육 및 재정분야의 전문인사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3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초등교육국장, 중등교육국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 또는 교육감의 자문에 응한다.

1. 지방교육재정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2. 지방교육재정운영 방향에 관한 사항
3.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4. 교육투자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5. 기타 교육감이 제출하는 사항

제5조 (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교육감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제6조 (안전배부 등)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개최 1주일전까지 당해 위원에게 배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 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7조 (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8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주무계장이 된다.

제9조 (수당) 위촉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결과보고)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 결정 사항을 지체없이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 (시행규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따로 교육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고법령 : 지방재정법

제6조 (교육, 과학 및 체육등에 관한 사항의 적용) 이 법에서 교육, 과학 및 체육에 관한 사항 또는 교육비특별회계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교육장”으로, “시장, 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장”으로, “시·도지사”는 “시·도의 교육장”으로, “내무부장관”은 “교육부장관”으로 각각 본다.

제16조 (중.장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을 계획성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중.장기지방재정계획(이하“지방재정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내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내무부장관이 정하는 계획수립절차 등에 의하여 당해 지방재정계획이 관계법령에 의한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내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재정계획을 기초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종합적인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국무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지방재정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6조의 2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① 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의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大田直轄市 地方教育 財政計劃 審議委員會 條例案

審 查 報 告

1993. 11. .

文教社會 委員會

I. 審 查 經 過

가. 提出日字 및 提案者 : 1993. 7. 16 大田直轄市 教育監

나. 回 附 日 字 : 1993. 7. 22.

다. 上 程 日 字 : • 第 25回 大田直轄市 議會 (臨時會)
第 1 次 文教社會 委員會 (93. 8. 25.)

上程, 審查, 留保.

• 第 26回 大田直轄市 議會 (臨時會)
第 1 次 文教社會 委員會 (93. 10. 22.)

上程, 審查, 留保.

• 第 27回 大田直轄市 議會 (臨時會)
第 3次 文教社會 委員會 (93. 11. 5.)

上程, 審查, 修正議決.

II. 提案說明 要旨 (提案說明 : 管理局長)

1. 提案理由

地方財政法 第 16條의 規定에 따라 教育監은 地方教育財政을 計劃性 있게 運用하기 위하여 中· 장기 地方教育財政計劃을 樹立하여 地方議會에 報告하고 教育部長官에게 提出하여야 하며,

地方教育財政計劃 樹立에 關하여 教育監의 諮問에 應하기 위하여 同法 第 16條의 2 第 1項의 規定으로 地方教育財政計劃審議委員會를 設置하고 同조 第 2項에 同 委員會의 構成과 運營에 關한 事項을 當該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定하도록 規定되어 本 條例案을 提案하는 것임 .

2. 主要骨子

가. 大田直轄市地方教育財政審議委員會 (이하 “委員會”라 한다.)의 規定目的을 定함. (案 第 1條) .

나. 委員會의 構成, 委員長 및 副委員長의 任務, 委員會의 機能과 會議運營에 關한 事項, 幹事에 關한 事項을 定함(案 第2條 내지 案 第 5條, 안 第 8條)

다. 委員會에 附議할 案件의 配付와 委員會가 必要로 하는경우 關係者의 意見을 聽取할 수 있도록 함(案 第 6條 내지 案 第 7條)

라. 委囑委員이 會議에 參席할 때에는 手當을 支給할 수 있도록 하였 고, 委員會의 審議 決定事項을 教育監에게 遲滯없이 報告하도록 하였음 (案 第 9條 내지 案 第 10條)

마. 委員會의 運營에 關하여 其他 必要한 事項은 教育規則으로 定할 수 있도록 하였음 (案 第 11條)

Ⅲ. 專門委員 檢討報告 要旨 (專門委員 : 金鎮鎬)

○ 이 條例制定案은 地方教育財政을 計劃性있게 運用하기 爲하여 地方 財政法 第 16條에 規定된 「中·長期 地方教育財政計劃」을 樹立함에 있어 教育監의 諮問에 응하도록 「大田直轄市 地方教育財政計劃 審議 委員會」를 設置하고 이의 運營에 관한 事項을 規定코자 하는 內容이 되겠음.

○ 本 條例 制定案의 主要內容을 報告드리면

첫째, 本 條例制定의 目的을 案 第 1條에 規定하고 있는 바 本 委員會의 構成과 運營에 관한 事項을 規定함을 目的으로 하고 있으며 이는 地方財政法 第 16條 2에 根據하고 있음

둘째, 委員會의 構成에 관한 事項으로써 委員會는 委員長을 包含한 11人의 委員으로 構成토록 하고 있음. 또한 委員은 教育監 所屬

公務員들로 構成되는 당연직 委員 6人과 教育 및 財政分野의 專門 人事 중에서 教育監이 委囑하는 委囑委員 5人으로 構成토록 하고 있음. 그러나 本 地方教育財政計劃 審議委員會는 教育財政의 5년

또는 20년에 걸친 中·장기적인 基本計劃의 樹立등 教育財政運營의 重要事項에 대하여 教育監의 諮問에 응하는 중대한 機能에 비

추어 볼때 시민의 意見이 立案段階에서부터 적극 反映되어져야 함은 當然하다 할것인 바, 市民의 代表機關인 教育委員이 本 委員會 構成에서 排除되고 있음은 아쉬운 점이라 思料되며, 또한 構成

比率에 있어서도 教育監 所屬 公務員들로 構成되는 당연직 委員이 總 11人중 6人을 차지하여 過半數에 달하고 있어 자칫 委員會 運營이 行政便宜主義的인 運營으로 흐를 憂慮가 있는 것으로 思料됩니다.

셋째, 委員會의 機能과 會議에 관한 事項으로써 委員會는 地方教育 財政計劃樹立에 관한 事項등 教育財政의 重要事項에 대하여 教育監의 諮問에 응하도록 하고 있으며 會議는 教育監 또는 委員長이 必要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 개최토록 하고 있음.

넷째, 其他 案件配付, 意見의 聽取등에 관한 事項을 案 第 6條 내지 11條에 規定하고 있는 바 別다른 問題點은 없는 것으로 思料됩니다.

- 以上에서 報告드린 本 「大田直轄市 地方教育財政計劃 審議委員會 條例案」은 地方財政法 第 16條에 規定된 中·장기 地方教育財政 計劃등 教育財政의 重要事項에 대하여 教育監의 諮問에 응하기 위하여 地方財政法 第 16條 2의 規定에 依據 財政計劃審議委員會를 設置·運營하려는 것으로써 別다른 問題點은 없는 것으로 判斷되나 條例案 第2條 委員會 構成에 대하여는 教育計劃에 대한 市民意見의 積極적인 收斂과 委員會 運營의 活性化를 위하여 再 檢討 되어야 할 것으로 思料됩니다.

IV. 討 論 要 旨 : 省 略

V. 質 疑 및 答 辯 要 旨 : 省 略

VI. 審 查 結 果 : 修 正 案 議 決

VII. 修正案 要旨

가. 修正理由 : 別添

나. 修正主要骨子 : 別添

VIII. 其他 必要한 事項 : 없 음

大田直轄市地方教育財政計劃審議委員會條例案에對한修正案

提出年月日 : 1993. 11. 5.

提出者 : 文教社會委員長

1. 修正理由

- 地方教育財政計劃 審議委員會의 委員會 構成에 市民의 代表機關인 教育委員會 教育委員이 包含되도록 함으로써
- 地方教育財政 中·長期計劃등의 樹立시 當初 立案段階에서부터 市民의 意見이 적극 反映되어지도록 하고자 함.

2. 修正 主要骨子

- 案 第2條 第4項의 內容中

「委囑委員은 教育및 財政分野의 專門인사 中에서」를 「委囑委員은 大田直轄市 教育委員會 教育委員과 教育및 財政分野의 專門인사 中에서」로 함.

대전직할시 지방교육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대전직할시 지방교육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 안 제2조 제4항중 「위촉위원은 교육 및 재정분야의 전문인사중에서」를 「위촉위원은 대전직할시 교육위원회 교육위원과 교육 및 재정분야의 전문인사 중에서」로 한다.

대전직할시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안수정조문대비표

조 례 안	수 정 안
<p>제 2 조 (구성) ① 생 략</p> <p>② 생 략</p> <p>③ 생 략</p> <p>④ 위촉위원은 <u>교육및 재정분야의 전문</u> <u>인사중에서</u> ——</p> <p>⑤ 생 략</p>	<p>제 2 조 (구성) ① 조례안과 같음</p> <p>② 조례안과 같음</p> <p>③ 조례안과 같음</p> <p>④ 위촉위원은 <u>대전직할시 교육위원회</u> <u>교육위원과 교육및 재정분야의 전문</u> <u>인사중에서</u> ——</p> <p>⑤ 조례안과 같음</p>